

의안번호	제 63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황규철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규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

발의자 : 황규철, 김기창, 서동학,
박우양, 연철흙, 전원표,
이상식, 송미애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,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동산 가격공시의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조)
- 제명 띄어쓰기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, 안 제9조, 별표 1)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 를 “필요” 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「하천법시행령」” 을 “「하천법 시행령」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20에 해당하는 금액” 을 “120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전단 중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” 을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「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한다.

제9조 중 “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세의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것 외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한다.

별표 1 제4호의 산정기준란 비고 제2호 본문 중 “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” 을 “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천법」 제37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토지의 점용, 토석, 모래·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, 변상금,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,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,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·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필요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하천수사용료는 「하천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하천법시행령」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120----- -----.</p>
<p>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</p>	<p>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/p>

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한다.

④·⑤ (생략)

⑥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징수의 절차에 따른다.

제9조(준용)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-----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 -----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

제9조(준용) -----

----- 것 외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
-----.

관계법령

□ 하천법 시행령

제57조(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)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(이하 “하천수사용료“라 한다)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. <이하 생략>

□ 국유재산법 시행령

제30조(사용료의 납부시기 등) ① ~ ③ <생략>

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“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. <이하 생략>

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

제3조(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·평가 및 공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, 그 밖의 자연적·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(이하 “표준지공시지가“라 한다)을 조사·평가하고,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<이하 생략>